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규제심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는 28명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9명(4급 11명, 4급 또는 5급 17명, 5급 3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3.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28명”을 “27명”으로, “11명”을 “10명”으로, “충원한다”를 “충원하며,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8명”을 “2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1”을 “292”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9”로 하며, 서기관 26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80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9”를 “18”로, 행정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1”을 “292”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9”로 하며, 서기관 26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을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80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8”을 “17”로, 행정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25”를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5”를 “123”으로 하며, “세무주사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25”를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5”를 “12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3”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락)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u>28명</u> (3·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u>11명</u> ,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u>충원한다</u> .	④ ----- <u>27명</u> ----- ----- ----- <u>10명</u> ----- ----- ----- ----- <u>충원하며,</u> <u>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u>28명</u> 중 8명(3·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⑤ ----- ----- ----- <u>27명</u> ----- ----- ----- ----- ----- ----- ----- -----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

⑥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91</u>	<u>292</u>	+1
·	·	·	
·	·	·	
일반직 계	<u>288</u>	<u>289</u>	+1
·	·	·	
·	·	·	
서기관	26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1</u>	+1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1</u>	<u><삭 제></u>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7</u>	+17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17	<삭 제>	-17
행정사무관	80		
<u>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신 설>	34	+34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u> <u>무관 · 공업사무관 · 농</u> <u>업사무관 · 보건사무관</u> <u>· 식품위생사무관 · 환</u> <u>경사무관 · 시설사무관</u> <u>· 전산사무관 · 방송통</u> <u>신사무관 또는 기록연</u> <u>구관</u>	<u>31</u>	<u><삭 제></u>	-31
·	·	·	
·	·	·	
행정서기	<u>19</u>	<u>18</u>	-1
행정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91</u>	<u>292</u>	+1
·	·	·	
·	·	·	
일반직 계	<u>288</u>	<u>289</u>	+1
·	·	·	
·	·	·	
서기관	26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1</u>	+1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1</u>	<u><삭 제></u>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7</u>	+17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17	<삭 제>	-17
행정사무관	80		
<u>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신 설>	34	+34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u> <u>무관 · 공업사무관 · 농</u> <u>업사무관 · 보건사무관</u> <u>· 식품위생사무관 · 환</u> <u>경사무관 · 시설사무관</u> <u>· 전산사무관 · 방송통</u> <u>신사무관 또는 기록연</u> <u>구관</u>	31	<삭 제>	-31
·	·	·	
·	·	·	
행정서기	18	17	-1
행정서기보	9	8	-1
·	·	·	
·	·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25</u>	<u>123</u>	-2
일반직 계	<u>125</u>	<u>123</u>	-2
·	·	·	
<u>세무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u>	<u>123</u>	-2
일반직 계	<u>125</u>	<u>123</u>	-2
·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u>3</u>	<u>2</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